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 9.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식생활소비정책과)

1. 개정이유

농산물 직거래법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4.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2. 주요내용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시행령안 제8조, 제14조)

나.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시행령안 제14조, 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중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를 “지정의 취소, 지정표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제2항제4호”를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u>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 -----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u>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u>인증의 취소 등</u>)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u>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u>지정의 취소 등</u>) ① ----- -----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취소</u>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u>인증을</u> 취소한 경우에는 <u>인증표시</u> 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② ----- ----- <u>지정을</u> ----- ----- <u>지정표시</u>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u>인증의 취소</u> , <u>인증표시</u> 의 제거·사용정지 또	③ ----- ----- <u>지정의 취소</u> , <u>지정표시</u> -----			

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 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 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 조제1항에 따른 <u>인증기관</u>의 장 ② (생 략)	----- ----- ----- --.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 6호까지----- ----- ----- ----- <u>지정기관</u>----- ② (현행과 같음)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지정표시의 변경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지정</u> 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u>지정</u> 취소		
나. <u>지정</u> 표시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용정지기간 중에 <u>지정</u>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u>지정</u> 취소		
다. 폐업, 전업(轉業)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u>지정</u> 취소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u>지정</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u>지정</u> 표시 사용정지 1개월	<u>지정</u> 취소
마.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 <u>지정</u> 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u>지정</u> 표시 사용정지 3개월	<u>지정</u> 취소
바.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u>지정</u>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u>지정</u> 표시 제거명령		
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않게 <u>지정</u>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u>지정</u> 표시 변경명령	<u>지정</u> 표시 사용정지 1개월	<u>지정</u> 표시 사용정지 3개월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u>지정</u> 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100	200	400
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2호	30	5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96